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등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11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추가	3

※ 참고자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교육환경법 제9조)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2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5.

3. 회부연월일 : 2025.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도 추가하여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3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 ----- ----- ----- ----- -----. ----- ----- ----- ----- ----- -----.
1. ~ 32. (생략)	1. ~ 32. (현행과 같음)
<신설>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u>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된 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u>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여¹⁾,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나열하고(참고자료 1 참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최근 특정 지역·특정 민족·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시위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바, 학생들이 시위대의 소음·욕설·폭언 및 과격한 주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는 시위대의 주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허가제를 명문으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금지하고 있고⁴⁾, 집시법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집단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음⁵⁾. 이외의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금지를 두지 않고,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시간·장소 해당 여부나 교통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금지 통고를 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하고 있음⁶⁾.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에

4)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대해서는 교육환경법 제10조에 따라 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⁷⁾. 이는 현행 집시법상의 금지통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와 별개로 사전적으로 해당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존 집시법과 유사한 방식(예: 집시법 규정의 준용)으로 규율하거나, 교육환경법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 국가 등을 혐오하는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내용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김태년의원안(제2213476호)	위성곤의원안(제2214079호)
현행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개정 내용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특정 인종·특정 국가의 국민·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비고	- 상기 두 일부개정법률안은 25.11.20.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 - 유사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집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 입법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집회 등을 금지하는 조문(제9조의2 신설)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경찰 등)과의 협력체계*, 제한 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 * (예시) 학교장이 관계기관(경찰 등)에게 협조요청 가능(집회 등 금지통고, 신고서 등 제공, 치안유지 등) ** (예시) 대학교는 미적용 / 학교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시간에만 제한 등 -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이 병행될 필요
○ 서울·인천 시·도교육청 -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실질적 규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병행 개정 필요
○ 강원·전남 시·도교육청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설에 대한 규제 중심이므로, 일시적인 시위에 대한 규제의 집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충북·경남 시·도교육청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위를 제한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울산시교육청 - 금지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 우려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교육환경법 제9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